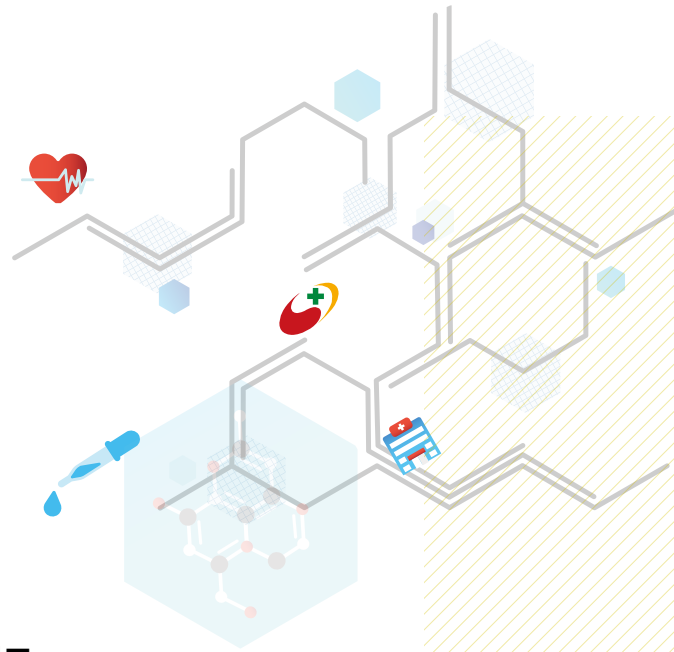


산업보건 주요뉴스



근로복지공단, 출퇴근재해 관련 지침 확정·발표

2018년부터 통상의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시행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지난해 12월 28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출퇴근재해 관련 지침을 확정, 발표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해왔다. 이번에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은 기존의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하다.

출퇴근 재해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 경로 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 시위, 집회 및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된다.

경로의 일탈·중단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 '생활용품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 등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간병' 등이다.

적용제외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중 본

인의 주거지에 차고지를 두고 있어 주거지 출발부터 업무가 개시되는 경우 사실상 출퇴근재해의 혜택은 받기 어렵고 보험료만 부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출퇴근재해만 적용을 제외하여 일반 산재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재해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된다.

산재 노동자 보호 확대, 영세 사업주 부담은 완화

2018년도 산재보험료를 1.80%로 결정

만성과로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대폭 개선

산재보험 급여항목 확대 및 인정기준 개선

고용노동부는 재해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하고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하는 '2018년도 산재보험료율',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등 제도 개편안을 공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8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8년도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80%다.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하여도 산재보상이 시행되며, 이에 대한 보험료율이 추가(0.15%)되는 것을 고려하면, 일반요율(1.65%)은 전년(1.70%) 대비 0.05%p 인하되었다.

업종 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유사업종 통폐합 등 전체 사업 종류를 전년(51개) 대비 6개 축소된 45개로 조정하였다. 특정 업종과 평균요율 간의 최대격차도 17배로 전년 19배에 비해 완화하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19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2019년도부터 개편 개별실적요율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 할인액 감소분만큼 일반요율에 추가 인하요인이 발생하며 영세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부담은 더욱 경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급여징수 제도 개편안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영세 사업주 부담완화 및 폐업, 산재은폐 등 급여징수 제도의 부작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만성과로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확대

현행 만성과로 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 간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 관련성이 증가한다. 야간·교대 근무 등의 경우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1주 평균 60시간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과 함께, 업무시간을 제외한 기타 종합적 고려요인(야간·교대근무 등)의 경우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획일적으로 60시간 기준을 충족해야만 산재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는 오해도 있어 왔다.

이에, 금번 고시개정을 통해 과로 기준시간을 3단계로 확대하여 ❶ 현행 60시간 기준은 당연인정기준으로 하고, ❷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 간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교대근무 등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강하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❸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한편, 야간근무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시간 산출 시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토록 규정하였다.

3. 산재보험 급여항목 확대 및 인정기준 개선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수가기준을 적용하되, 산재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비급여를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금번 고시개정을 통해 2018년 1월 1일부터 휠체어, 관절보조기, 보청기 등 총 22개 항목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급여항목 확대와 관련해서는 설치형 전동리프트, 어깨보조기, 수동·전동휠체어 동시 지급 등 재활보조기구 품목이 신설되고, 내구연한 내 추가지급, 교환·수리로 등의 지급기준도 확대된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 소견서, 재활특진, 전원요양 신청소견서, 간병요구도 평가소견서, 진료기록부 복사료, 토털서비스 이용료 등 각종 수수료도 지원된다.

급여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보청기,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하여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하여 건강보험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되며, 치료에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재해자의 고통이 심한 화상의 경우, 지급대상이 체표면적의 60% → 40%로 완화된다.

앞으로도 화상, 수지 절단 등 비급여 항목이 많은 산재에 대하여 급여항목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작업이 지속될 예정이다. 🍵